#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04) 상품요약서

##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1형 : 납입면제 기본형 ② 2형 : 납입면제 환급형

## □ 가입가능나이

## <기본계약>

| 구 분                         | 보험<br>기간 | 납입<br>기간 | 가입나이     |
|-----------------------------|----------|----------|----------|
| TICALID HALHTA (4 70) (OTT) | 5년       |          | DI40.III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 10년      | 전기납      | 만18세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비운전자)      | 15년      | 2718     | ~80세     |
|                             | 20년      |          |          |

## <의무부가 계약>

| 구 분                  | 보험<br>기간   | 납입<br>기간 | 가입나이  |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 5년<br>10년  |          | 만18세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 15년<br>20년 | 전기납      | ~80HI |

## <선택계약>

|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      |          |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      |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 5년   |      |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      |      |          |
| ■일반상해사망                          |      |      |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      |          |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      |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년  |      |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      |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      |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자가용운전자) |      | 전기납  | 만18세~80세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      |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15년  |      |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      |      |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      |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      |      |          |
| ■골프중상해사망                         | 201= |      |          |
|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                      | 20년  |      |          |
|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      |      |          |
| ■팔및손가락후유장해                       |      |      |          |

|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ul> <li>▼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li> <li>▼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li> <li>▼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li> </ul>   | 5년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br>●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운전자)<br>●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비운전자)<br>●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단, 2주이상)(운전자)   |      |      |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운전자)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운전자)   | 10년  |      |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br>■5대골절진단비<br>■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자)  | 15년  |      |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비운전자) ■골절수술비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      |      |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조동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하수술비  □내측상과영(골프엘보우) 진단비  □외측상과영(테니스엘보우) 진단비  □강력범죄피해보장  □상해흥터복원수술비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비운전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행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행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행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청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존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중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장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자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장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장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자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자)  □본전자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자)  □본전자교통상해임원일당(1일이상)Ⅱ(  □본전자)  □본전자( □본전자( □본전자)  □본전자( □ | 20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br>■상해사고부상보장 I<br>■상해사고부상보장 II<br>■상해사고부상보장 III  |      |      |          |

|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                             |      |      | ,_ ,_ ,, |
|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
|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      |      |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                        |      |      |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      |      |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                           |      |      |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5년   |      |          |
| ■골프용품손해                                    |      |      |          |
| ■홀인원비용손해                                   |      |      |          |
| ■알바트로스비용손해                                 |      |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                |      |      |          |
|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                        |      |      |          |
|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      |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                      |      |      |          |
| ■치핵수술비                                     |      |      |          |
| ■심한상해수술비                                   |      |      |          |
|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한)                            |      |      |          |
|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10년  |      |          |
| ■교통사고처리보장Ⅱ(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Ⅲ(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IV(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 V (중상해보장확대) (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VI(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께(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기가입자용)(운전자)             |      | 전기납  | 만18세~80세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비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비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운전자)                | 15년  |      |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비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비운전자)               |      |      |          |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      |      |          |
|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      |      |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15회한)                |      |      |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30회한)                |      |      |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60회한)                |      |      |          |
| ■통합상해진단비                                   |      |      |          |
| 주) 통합상해진단비(경증),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 통합상해진단비(중증)로 |      |      |          |
| 구성됨  |      |      |          |
| ■상해(T검사비(급여, 연간1회한)                        |      |      |          |
| ■상해MRI검사비(급여, 연간1회한)<br>■골절부목치료비           | 20년  |      |          |
|  |      |      |          |
| ■창상봉합술 치료비(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      |      |          |
| ■창상봉합술 치료비(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차대차사고)(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차대차사고)(비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차대차사고)(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차대차사고)(비운전자)            |      |      |          |

|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         |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운전자)                      | 5년      |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III(운전자)                    | 0       |           |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3백만원한도)(운전자)               |         |           |                             |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                               |         |           |                             |
| ■자동차사고벌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 10년     |           |                             |
|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         |           |                             |
|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II(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         | 전기납       | 만18세~80세                    |
| ■외상성특정뇌손상 진단비                                      | 15년     |           |                             |
| ■외상성특정뇌출혈 진단비                                      |         |           |                             |
| ■외상성특정장기손상 진단비                                     |         |           |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운전자)                              |         |           |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운전자)                     | 20년     |           |                             |
| ■지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경찰조사포함)(변호사Ⅱ 3천만원 기기입자 기입용)(운전자) | 202     |           |                             |
| ·지동자시고 변호시선임비용소해॥(경찰조시포함)(변호시: 5천만원 기기입자 기입용)(운전자) |         |           |                             |
| ■화재손해(실손보상)  |         |           |                             |
| <b>■</b>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5년      |           |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           |                             |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보상)                                   | 10년     |           |                             |
| ■화재배상책임  |         |           | U140111 00111               |
| ■가족화재벌금  | 1513    | 전기납       | 만18세~80세                    |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15년     |           |                             |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           |                             |
|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 20년     |           |                             |
| ■도난손해  |         |           |                             |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           |                             |
|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           |                             |
|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5년      |           |                             |
|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 TJ 7 11 L | U1401   001                 |
|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 전기납       | 만18세~80세                    |
|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 401 =   |           |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 10년     |           |                             |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           |                             |
| ■화상수술비   | 5년      |           |                             |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         |           |                             |
|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                                 | 10년     |           |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br>15년 | י ייר די  | UL10111 CO111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 전기납       | 만18세~60세                    |
| ■척추상해수술비   |         |           |                             |
| ■척추질병수술비   | 20년     |           |                             |
| ■3대하지관절상해수술비                                       |         |           |                             |
|  | 5년      |           |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10년     | 74711.    | חויסטיוו טטיוו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15년     | 전기납       | 만20세~80세                    |
|  | 20년     | <u></u>   |                             |
|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 5년      |           | 만18세~                       |
| ■중대한화경 및 구역전한미<br>■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10년     | 전기납       | (80-보험기                     |
| ■당대한국당장에구돌미<br>■뇌내장손상수술비                           | 15년     | [단기日      | (60 <sup>-</sup> 포함기<br>간)세 |
| - 4 4 4 0 C 0 T さ U                                | 20년     |           | 근/세                         |

| 구 분                              | 보험    | 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 5     | 년  |          |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    |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180일)        | 10    | )년 |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180일)   |       |    | 전기납      | 만18세~65세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180일) | 15    | 5년 | 선기법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1-60일)         |       |    |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60일)    | 20    | )년 |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60일)  |       |    |          |                                 |
|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 5년    |    | 전기납      | 만18세~80세                        |
|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 10년   |    | 신기급      | 전 10시[]~00시[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    |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5년    |    |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전기납   |    | 만18세~80세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II    | 선기업 인 |    |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1~10급)     | 10년   |    |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       |    |          |                                 |
|                                  | 최초    | 5년 | 전기납      | 만18세~80세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갱신계약】              |       |    |          | 23세~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화재배상제외)【갱신계약】      | 갱신    | 5년 | 전기납      | (생 <b>으로</b> 10 <sup>22</sup> ) |
|                                  |       |    |          | -보험기간)세                         |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 능할 수 있음
- 주2)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와 동일하게 운영함
- 주3)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실제 가입한 기본계약 보험 기간 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 주4)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 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3) 독립특별약관

| 구 분   | 보험 | 형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최초 | 3년   |      | 만15세~70세  |
| 무배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갱신계약】<br>-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갱신계약】<br>-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전환용) 【갱신계약】 | 갱신 | 1~3년 | 전기납  | 80세만기: 18세~79세<br>90세만기: 18세~89세<br>100세만기: 18세~99세<br>110세만기: 18세~109세 |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위에서 정한 가입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 보통약관의 가입 나이 범위 이내로 함
- 주3)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최초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보험만기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 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갱신함.
- 주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 주5) 갱신종료나이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 보통약관의 보험만기 또는 갱신종료나이에 준함.

####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 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 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 집.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④ 기본계약 및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 1)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은 자가용 운전자,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 2)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비운전자)은 비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1) 아래의 특별약관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해 가입가능함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치상해후유장해(3~79%)(지기용운전자)■ 자동차사고 성형비용(자기용운전자)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치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기용운전자)

- 2) 아래의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해 가입가능함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Ⅱ
- 3) 아래의 특별약관은 비운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운전자)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운전자)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운전자)
  -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자)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운전자)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II(운전자)
  -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IV(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 V (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 스쿨존지동차사고벌금 II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 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단, 2주이상)(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기가입자용) (운전자)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운전자)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차대차사고)(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차대차사고)(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 자동차사고벌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Ⅱ(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Ⅲ(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II (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VI(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Ⅶ(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II(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Ⅲ(운전자)
  - JENDAR LES (3HLT) 671 LH (34LBELT) (25XX)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 (변호사 11 3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III(경찰조사포함) (변호사 11 5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 4)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 특별약관 또는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은 골 절수술비,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또는 골절수술비(1~5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 5)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운전자) 특별약관은 교통상해골절진단비(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교통상 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 특별약관은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6)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운전자) 특별약관은 교통상해골절수술비(운전자) 또는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가입자 에 한해,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특별약관은 교통상해골절수술비(비운전자) 또는 상해수술비 특

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7)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을 2백만원으로 운영함
- 8)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은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 9) 응급실내원비(1급.2급)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 보장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 응급실내원비(1급)

■ 응급실내원비(2급)

- 10)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특별약관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 11) 홀인원비용손해 및 알바트로스비용손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운영함
- 12) 상해사고부상보장 II 특별약관은 상해사고부상보장 I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13) 상해사고부상보장III 특별약관은 상해사고부상보장I, 상해사고부상보장II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14)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15)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16)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1종) 보장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2종) 보장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3종) 보장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4종) 보장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5종) 보장
- 17) 통합상해진단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 통합상해진단비(경증)

■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

- 통합상해진단비(중증)
- 18) 통합상해진단비 특별약관과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 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함.
- 19) 척추상해수술비 특별약관과 척추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20) 자동차사고벌금॥(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특별약관과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21)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특별약관과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II(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특별약관 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22)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II(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 특별약관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라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 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장

- 예시) 자동차사고 벌금(운전자) 특별약관 기가입자
- 23)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차대차사고)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차대 차사고)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24)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차대차사고)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 (차대차사고)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25)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26)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다음의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
- 27)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화재배상제외) 【갱신계약】특별약관은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28)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갱신계약】 특별약관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화재배상제외)【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29)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30)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31)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신6대가 전제품수리비용손해,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32)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33) 화재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목적으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 3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특별약관, 자동 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경찰조사포함)(운전자)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3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변호사II 3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변호사II 5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운전자)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경찰조사포함)(운전자) 특별약관
- 3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변호사II 3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변호사II 5천만원 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특별약관 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장

-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 이 진행하게 된 경우
  -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II(운전자) 또는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 및 자동차 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II(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동시가입 가입자
- 37)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과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38) 창상봉합술 치료비(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특별약관과 창상봉합술 치료비(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39)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기가입자용)(운전자)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 교통사고처리보장 V(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Ⅱ(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Ⅲ(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IV(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별약관
-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VI(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보장Ⅶ(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특별약관

40)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보장확대)(기가입자용)(운전자) 특별약관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 은 경우
  -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예시) 교통사고처리보장(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II(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III(운전자), 교 통사고처리보장IV(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V(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VI(운전자) 또는 교통사고처리보장((운전자) 가입자
- 41)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 - 독립특별약관

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전환용)【갱신계약】특별약관은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 계약] 특별약관이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업체의 폐업 등으로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어 해당 특 약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전환계약으로만 가입 가능함.

####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적립부분) 공시이율: "보장성-1701 공시이율"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

## □ 보험기간. 납입기간: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보통약관 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 율로 할인함

#### □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종목에 따른 의무부가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음

| 의무부가 특별약관               | 비고   |
|-------------------------|--|
| T 파돌살에서 MUI살으유살에(미우전 M) | 계약자(피보험자)가 납입면제를 인지하<br>지 못한 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br>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 ③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 납입면제 발생시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은 제외함)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적립보험료 는 납입이 중지됨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1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신6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 가족화재벌금

- 임차자배상책임(화재)(비례보상)
- 도난손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화재배상제외) 【갱신계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갱신계약】
- 화재손해(실손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보상)
- 화재배상책임
- 3) 위 2) 이외의 【갱신계약】특별약관은 위 1)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본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
  - 【갱신계약】특별약관
  - ②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갱신계약】특별약관은 갱신주기(5년)마다 자동갱신 됨.
    - 나)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다)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

험료를 통보함

- ③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가)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각 담보별 갱신 보험기 간 동안 적용함.
- ④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를 적용함
- ⑤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 □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가. 당사 자동차보험 기가입자 할인
  - 1)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계약이 성립된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제2회 영업보험료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함(1회만 적용)
  - 2) 할인금액

| 납입주기 | 할인금액       |
|------|------------|
| 월납   | 영업보험료의 10% |

#### 나. 블랙박스 장착 할인

- 1)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제2회 영업보험료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함(1회만 적용)
  -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계약이 성립된 당사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동 일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당시 당사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2) 할인금액

| 납입주기 | 할인금액      |
|------|-----------|
| 월납   | 영업보험료의 5% |

#### 다. 희망플러스 자녀할인

1)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만13세 이하(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2회 영업보험료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함(1회만 적용)

#### 2) 할인금액

| 납입주기 | 할인금액       |
|------|------------|
| 월납   | 영업보험료의 10% |

- 3) 제출 증빙서류
-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단,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만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상기 가, 나, 다의 보험료 할인금액 합계는 최대 3만원을 한도로 함.

##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①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③ ①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④ 회사는 ①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 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⑤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가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음)

####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주요 용어의 해설

- ①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급여금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기본계약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자동차사고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         |
| 부상보장(1~7급) |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  | 가입금액    |
| (운전자)      | 을 받은 경우                          |         |
| 자동차사고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         |
| 부상보장(1~7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 | 가입금액    |
| (비운전자)     | 급)을 받은 경우                        |         |

## □ 의무부가 계약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교통상해50%<br>이상후유장해<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교통상해50%<br>이상후유장해<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 선택계약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교통상해사망<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br>장해(3~100%)<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교통상해후유<br>장해(3~100%)<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후유<br>장해(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일반상해후유<br>장해(20~100%)                   |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br>망<br>(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br>%이상후유장해<br>(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이<br>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br>유장해(3~79%)<br>(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3~79%<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br>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br>장해(3~7%)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br>상해사망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br>80%이상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br>후유장해(3~79%)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                              |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팔및손가락<br>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br>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br>우                 | 가입금액×지급률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A(1~3급)<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br>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A(1~3급)<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br>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br>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A(4~14급)<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A(4~14급)<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br>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br>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1~14급)<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br>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br>부상보장(1~14급)<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br>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br>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br>(1~5급)<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br>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br>(1~5급)(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br>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br>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br>(1~11급)(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br>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br>(1~11급)(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br>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br>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br>(1~14급,1일이상)<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br>- 가입금액<br>8~11급 :<br>- 가입금액×2/7<br>12~14급 :<br>- 가입금액×1/7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br>(1~14급,1일이상)<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br>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br>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br>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br>- 가입금액<br>8~11급 :<br>- 가입금액×2/7<br>12~14급 :<br>- 가입금액×1/7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br>(1~11급,1일이상)<br>(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 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br>- 가입금액<br>8~11급 :<br>- 가입금액×2/7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br>(1~11급,1일이상)<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br>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br>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br>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br>- 가입금액<br>8~11급 :<br>- 가입금액×2/7                           |
| 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br>단, 2주이상)(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2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br>경우  | 수술 종류에 따른<br>가입금액(수술1회당)  |
|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br>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인하여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진단 후<br>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br>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br>1일1회한, 연간15회한)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br>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합<br>산 연간 15회한)  | 가입금액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br>1일1회한, 연간30회한)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br>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합<br>산 연간 30회한)  | 가입금액  |
| 상해재활치료비(급여,<br>1일1회한, 연간60회한)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br>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입원/통원 각각 1일 1회, 합<br>산 연간 60회한)  | 가입금액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통합상해진단비(경증)               | 상해사고로 통합상해(경증)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br>(부위별, 연간1회한)  |
|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              | 상해사고로 통합상해(중등증)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br>(부위별, 연간1회한)  |
| 통합상해진단비(중증)               | 상해사고로 통합상해(중증)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br>(부위별, 연간1회한)  |
| 상해CT검사비(급여,<br>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br>CT검사(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br>(연간1회한)   |
| 상해MRI검사비(급여,<br>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br>MRI검사(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br>(연간1회한)   |
| 창상봉합술<br>치료비(안면/경부)(1일1회한 | 상해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 I (급여)(안면/경부)'<br>을 받는 경우  | '창상봉합술 치료비 I<br>(안면/경부)(1일1회한,<br>연간3회한, 급여)'보장<br>보험가입금액   |
| , 연간3회한, 급여)              | 상해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II(급여)(안면/경부)'을 받는 경우   | '창상봉합술 치료비॥<br>(안면/경부)(1일1회한,<br>연간3회한, 급여)'보장<br>보험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br>치료비(안면/경부        | 상해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r>외)'을 받는 경우   | '창상봉합술 치료비 I<br>(안면/경부 외)(1일1회한,<br>연간3회한, 급여)'보장<br>보험가입금액 |
| 외)(1일1회한, 연간3회한,<br>급여)   | 상해사고로 인하여 '창상봉합술II(급여)(안면/경부<br>외)'을 받는 경우  | '창상봉합술 치료비॥<br>(안면/경부 외)(1일1회한,<br>연간3회한, 급여)'보장<br>보험가입금액  |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II<br>(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부목치료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치아파절<br>제외)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br>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br>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br>5대골절진단비<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br>5대골절진단비<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br>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br>골절수술비<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br>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br>골절수술비<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br>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br>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br>5대골절수술비<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br>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교통상해<br>5대골절수술비<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br>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br>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br>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피부의 상피층뿐만<br>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 2도 이<br>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br>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br>고당)   | 가입금액  |
| 중대한화상및<br>부식진단비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강력범죄<br>피해보장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br>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br>수술비                               |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br>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br>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br>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 안면부 1cm당 14만원<br>상하지 3cm이상 1cm 당<br>7만원<br>(1사고당 500만원<br>한도)       |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입원일당<br>(1일이상) II<br>(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교통상해입원일당<br>(1일이상) II<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br>(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상해입원일당<br>(1일이상) II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br>(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br>(1일이상)II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br>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br>상)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br>일당 1회, 입원당 180일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운전중교통상해<br>입원일당(1일이상) II<br>(운전자)           |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자동차사고<br>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br>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br>(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II(안면<br>부)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br>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br>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br>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br>이 <sup>주2)</sup> 에 따라 차등지급) | 안면부(5cm이상~<br>10cm미만)<br>: 가입금액의 60%<br>안면부(10cm이상)<br>: 가입금액의 100% |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br>(엉덩,무릎)(이차성 및<br>상세불명 제외)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1회 수술당)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br>은 경우   | 가입금액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 지 급 금 액  |
|--|--|------------------|--|
|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br>(요양병원제외, 급여,<br>연간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br>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br>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가입금액<br>(연간1회한)  |
|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br>(요양병원제외, 급여,<br>연간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br>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br>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가입금액<br>(연간1회한)  |
| 응급실내원비<br>(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br>경우  | (                | 가입금액<br>(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br>(1급, 2급)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   | (                | 가입금액<br>[내원 1회당)   |
| 자동차사고성형비용<br>(자가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br>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br>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br>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손해<br>(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J                | h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손해॥<br>(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כ                | 1입금액 한도  |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u>t</u>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손해배(경찰<br>조사포함)(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br>(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기입<br>금액<br>5천만원 | 부상등급<br>1~7급: 5천만원<br>부상등급 8~11급:<br>1천만원<br>부상등급 12~14급<br>: 5백만원 |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경우   | t-               | 보험가입금액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손해배(경찰<br>조사포함)(변호사비 3천만원<br>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3천만원을 초과하는<br>금액의 2천만원 한도  |
|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또는 불기소된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7급 :<br>5천만원<br>부상등급 8~11급 :<br>1천만원<br>부상등급 12~14급 :<br>5백만원 |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경우   | 5천만원한도   |
| 자동차사고<br>변호사선임비용손해배(경찰<br>조사표하)(병호사비 5천만왕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br>(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
| 조사포함)(변호사II 5천만원<br>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경우   | 5천만원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br>(영업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br>(영업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br>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br>처리보장<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br>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br>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br>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1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2천만원 한도<br>140일 이상:<br>3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br>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br>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br>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1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3천만원 한도<br>140일 이상:<br>5천만원 한도 |
| 처리보장 II<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br>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br>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br>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1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4천만원 한도<br>140일 이상:<br>7천만원 한도 |
| 처리보장   <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교통사고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br>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br>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br>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1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5천만원한도<br>140일 이상:<br>1억원 한도   |
| 처리보장IV<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교통사고<br>처리보장 V<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2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7천만원한도<br>140일 이상:<br>1억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br>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br>처리보장VI<br>(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2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8천만원한도<br>140일~174일:<br>1억원 한도<br>175일 이상:<br>1억5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 2억원 한도  |
| 교통사고<br>처리보장VII                             |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2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8천만원한도<br>140일~174일:<br>1억원 한도<br>175일 이상:<br>1억5천만원 한도 |
| (중상해보장확대)<br>(운전자)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억원 한도  |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br>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br>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br>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br>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br>처리보장<br>(중상해보장확대)<br>(기가입자용)(운전자)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br>위반, 6주미만)<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br>150만원한도<br>28일~41일:<br>500만원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br>위반, 6주미만)॥<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br>300만원한도<br>28일~41일:<br>800만원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br>위반, 6주미만)III<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br>500만원한도<br>28일~41일:<br>1,000만원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br>위반, 6주미만)(3백만원한도)<br>(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br>50만원한도<br>28일~41일:<br>300만원한도  |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br>(운전자)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백만원 한도<br>(1사고당)   |
| 보복운전<br>피해보장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sup>주3)</sup> 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 의료사고<br>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br>(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br>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br>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br>된 경우  | 700만원 한도<br>(과실치상일 경우<br>500만원)<br>(1사고당)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br>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br>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br>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천만원 한도<br>(1사고당)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상해사고부상보장 I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으로 진단 확정된<br>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II"으로 진단 확정된<br>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Ⅲ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III"으로 진단 확정된<br>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80%이상<br>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교통상해80%이상<br>후유장해(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고속도로<br>교통상해사망<br>(운전자)  |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고속도로<br>교통상해사망<br>(비운전자) | 비운전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br>우  | 가입금액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 홀인원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br>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br>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br>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br>(최초 1회한)  |
| 알바트로스<br>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br>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br>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br>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br>(최초 1회한)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 변호사비용<br>:1,500만원한도<br>(1사고당 자기부담금<br>10만원)<br>인지액 + 송달료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함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함               | : 500만원한도<br>변호사비용<br>:1,500만원한도<br>(1사고당 자기부담금<br>10만원)<br>인지액 + 송달료<br>: 500만원한도 |
| 6대가전제품<br>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br>보상(자기부담금 2만원)<br>* 6대가전: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br>자레인지                          | 가입금액 한도  |
| 12대가전제품<br>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 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 가입금액 한도  |
| 신6대가전제품<br>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6대가전: 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 가입금액 한도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가입금액 한도  |
| 신10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10대가전: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가입금액 한도  |
|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br>보상(자기부담금 2만원)<br>*8대 문화용품: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br>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br>벌금: 1,500만원 한도<br>형법 제171조에 의한<br>벌금: 2,000만원 한도 |
| 골절진단비<br>(치아파절제외)<br>(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되고, 골절<br>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br>(등급별 연간1회한)  |
| 골절수술비<br>(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br>(등급별 연간1회한)  |
| 외모특정상해<br>(머리,목)수술비                | 상해사고로 외모특정상해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br>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br>(매사고시)   |
| 골절진단비<br>(치아파절포함)<br>(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br>(1사고당, 연간1회한)  |
| 치핵수술비                              | 지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br>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br>* 1년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br>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br>개흥(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심한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br>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br>교통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신주말 <sup>주4)</sup> 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br>과로써 사망시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80%이<br>상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신주말 <sup>주4)</sup> 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br>해(3~79%)          | 보험기간 중 신주말 <sup>주4)</sup> 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br>유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치아파절진단비<br>(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br>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br>(연간 3회한)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호흡기관련질병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  | 가입금액  |
| 수술비                                      | 를 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
| 특정법정감염병<br>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정법정감염병 I ,IV<br>:가입금액의 100%<br>•특정법정감염병 II,III<br>: 가입금액의 50% |
| 일반상해80%이상<br>후유장해                        |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가족일상생활중<br>배상책임III<br>【갱신계약】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br>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br>(보험증권에 기재된<br>자기부담금 공제)                              |
| 가족일상생활중<br>배상책임III<br>(화재배상제외)<br>【갱신계약】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br>(보험증권에 기재된<br>자기부담금 공제)                              |
| 척추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br>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척추질병수술비                                  |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br>* 1년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내측상과염<br>(골프엘보우) 진단비                     | 약관상 내측상과염 분류표에서 정한 내측상과염으로<br>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외측상과염<br>(테니스엘보우) 진단비                    | 약관상 외측상과염 분류표에서 정한 외측상과염으로<br>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3대하지관절<br>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br>(1일이상)(요양병원제외)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br>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br>경우   | 가입금액(1일당)<br>(단, 간병인 사용금액이<br>1일당 7만원미만인 경우 :<br>가입금액의 50%)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br>(1일이상)(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br>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1-180일)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일이상<br>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br>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 1-180일)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br>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br>도)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br>(상급종합병원, 1-180일)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br>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180<br>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1-60일)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일이상<br>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br>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 1-60일)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br>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60일 한<br>도)                                       | 가입금액(1일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br>상해입원일당<br>(상급종합병원, 1-60일)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br>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60일<br>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자동차사고벌금॥<br>(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br>(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br>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천만원 한도<br>(1사고당)<br>(단, 특정범죄 가중처벌<br>등에 관한 법률<br>제5조의13(어린이<br>보호구역에서 어린이<br>치사상의 가중처벌)을<br>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br>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br>(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br>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천만원 한도<br>(1사고당)   |
|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2천<br>만원초과,1천만원한도)<br>(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br>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br>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br>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br>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br>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중 2천만<br>원 초과 금액 | 1천만원 한도<br>(1사고당)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br>(1~3급)(차대차사고)<br>(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br>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br>(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br>(1~3급)(차대차사고)<br>(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br>(4~14급)(차대차사고)<br>(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br>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br>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br>(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br>(4~14급)(차대차사고)<br>(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1)</sup>  |
| 외상성특정뇌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외상성특정뇌손상으로<br>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외상성특정뇌출혈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외상성특정뇌출혈로 진<br>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외상성특정장기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외상성특정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br>(최초 1회한)  |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br>(1~10급)                 | 골프중 카트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br>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br>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5)</sup>  |
| 차대차사고 차량<br>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br>가용)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br>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br>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br>경과기간에 따른<br>차등지급 <sup>주7)</sup>   |
| 차량유리<br>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br>연간1회한)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유리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상해사망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br>장해시  | 가입금액<br>× 지급률   |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br>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br>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br>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br>(1일당)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사고부상보장(1~10급)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br>따라 차등지급 <sup>주6)</sup>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br>교통사고처리보장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br>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br>너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br>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br>1천만원 한도<br>70일~139일:<br>2천만원 한도<br>140일 이상:<br>3천만원 한도 |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화재손해<br>(실손보상)                 |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주택의 경우<br>폭발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br>가입금액 한도<br>(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
| 잔존물<br>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화재손해액의 10%를<br>초과할 수 없음)   |
| 주택화재<br>임시거주비<br>(1일이상)        |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br>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 특수건물풍수재손해<br>(실손보상)            |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br>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br>훼손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건물복구비용지원<br>(화재)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br>생겨 수리, 복구시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후유장해 : 최고 1억원  |
| 임차자 배상책임(화재)<br>(비례보상)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br>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br>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br>(보험증권에 기재된<br>자기부담금 공제)                                 |
| 신체손해배상책임<br>(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br>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br>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br>정한 금액 한도   |
| 화재대물배상책임<br>(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br>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br>정한 금액 한도   |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 상해등급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예시 |
|------|-----------------|---------|
| 1급   | H41EJ4(1 0J)    | 1,000만원 |
| 2급   | 부상등급A(1~3급)     | 500만원   |
| 3급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 상해등급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예시 |
|----------|-----------------|---------|
| 4급       |                 | 300만원   |
| 5급       |                 | 150만원   |
| 6급       | 부상등급A(4~14급)    | 80만원    |
| 7급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40만원    |
| 8 ~ 11급  |                 | 20만원    |
| 12 ~ 14급 |                 | 10만원    |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주3)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 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 주4)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주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 상해등급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예시 |
|-------|------------------------|---------|
| 1~3급  | ㅂ사드그(1, 10그)           | 500만원   |
| 4~7급  | 부상등급(1~10급)            | 100만원   |
| 8~10급 | 포함기합 <mark>급</mark> 기반 | 20만원    |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 상해등급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예시 |
|---------|-----------------|---------|
| 1급      |                 | 500만원   |
| 2급      |                 | 250만원   |
| 3급      |                 | 150만원   |
| 4급      | 부상등급(1~10급)     | 150만원   |
| 5급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75만원    |
| 6급      |                 | 40만원    |
| 7급      |                 | 20만원    |
| 8 ~ 10급 |                 | 10만원    |

## 주7)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지급금액

| 구분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  |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br>손실지원금<br>(단,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br>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함) |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
|  |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
|  | 5년초과      | 수리비용의 5%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독립특별약관

#### ◇ 간병인 입원일당 관련 독립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명                                       | 지 급 사 유  | 지급 금액                  |
|---|--|------------------------|
| 무배당 간병인지원<br>상해입원일당(1일이상)॥<br>【갱신계약】 특별약관 | •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갱신계약】:<br>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br>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br>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br>지급하여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1회 입원당 180일<br>한도) | 가입금액 또는<br>간병인 지원(1일당) |
|   | • 상해입원일(1일이상)॥(전환용)【갱신계약】:<br>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br>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의료비, 배상책임, 실손운전자비용 담보는 의료비, 배상책임, 실손운전자비용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다수계약이라?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 보험으로 합니다.

③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보험료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 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 ② 이 상품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sup>주1)</sup>과 외부지표금리<sup>주2)</sup>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③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입니다.

#### □ 적용위험률

##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자가용운전자 기준)

| 보장위험            | 급수 적용위험률 |          |          |
|-----------------|----------|----------|----------|
| TONE            | ᆸᅮ       | 남자       | 여자       |
|                 | 1급       | 0.000348 | 0.000194 |
|                 | 2급       | 0.000298 | 0.000175 |
|                 | 3급       | 0.000151 | 0.000092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 4급       | 0.000194 | 0.000116 |
|                 | 5급       | 0.000541 | 0.000305 |
|                 | 6급       | 0.000284 | 0.000170 |
|                 | 7급       | 0.000513 | 0.000308 |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라. 보험가격지수

####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40세, 상해1급, 자가용 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

| 구분           | 보험가격지수(%) |       |
|--------------|-----------|-------|
| 十世           | 남자        | 여자    |
| 1형(납입면제 기본형) | 109.1     | 108.0 |
| 2형(납입면제 환급형) | 106.6     | 108.6 |

####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 해약환급금

ㅇ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 운전자, 월납 30,000원, 20년만기 20년납

○ 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500만원 ○ 의무부가계약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1,000만원

ㅇ 선택계약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1억원

일반상해사망 1억원

교통사고처리보장VII(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 2억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운전자) 5천만원 자동차사고벌금II(스쿨존사고3천만원한도)(운전자) 3천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500만원

#### < 1형(납입면제 기본형) >

(단위: 원, %)

|     | 납 입<br>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           |      |  |
|-----|------------|-----------|------|-----------|------|-----------|------|--|
| 구 분 |            | 최저보증이율시   |      | 적용이율시     |      |           |      |  |
|     |            |           |      | 평균공시이율    |      | 공시이율      |      |  |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60,000    | 43,000    | 12.1 | 45,000    | 12.5 | 45,000    | 12.5 |  |
| 3년  | 1,080,000  | 465,000   | 43.1 | 478,000   | 44.3 | 478,000   | 44.3 |  |
| 5년  | 1,800,000  | 892,000   | 49.6 | 927,000   | 51.6 | 927,000   | 51.6 |  |
| 7년  | 2,520,000  | 1,348,000 | 53.5 | 1,417,000 | 56.2 | 1,417,000 | 56.2 |  |
| 10년 | 3,600,000  | 1,921,000 | 53.4 | 2,064,000 | 57.4 | 2,064,000 | 57.4 |  |
| 15년 | 5,400,000  | 2,865,000 | 53.1 | 3,197,000 | 59.2 | 3,197,000 | 59.2 |  |
| 20년 | 7,200,000  | 3,799,000 | 52.8 | 4,408,000 | 61.2 | 4,408,000 | 61.2 |  |

#### < 2형(납입면제 환급형) >

(단위 : 원, %)

|     | 납 입<br>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           |      |  |
|-----|------------|-----------|------|-----------|------|-----------|------|--|
| 구 분 |            | 최저보증이율시   |      | 적용이율시     |      |           |      |  |
|     |            |           |      | 평균공시이율    |      | 공시이율      |      |  |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60,000    | 42,000    | 11.8 | 44,000    | 12.2 | 44,000    | 12.2 |  |
| 3년  | 1,080,000  | 459,000   | 42.5 | 471,000   | 43.7 | 471,000   | 43.7 |  |
| 5년  | 1,800,000  | 884,000   | 49.1 | 918,000   | 51.0 | 918,000   | 51.0 |  |
| 7년  | 2,520,000  | 1,340,000 | 53.2 | 1,409,000 | 55.9 | 1,409,000 | 55.9 |  |
| 10년 | 3,600,000  | 1,906,000 | 53.0 | 2,048,000 | 56.9 | 2,048,000 | 56.9 |  |
| 15년 | 5,400,000  | 2,833,000 | 52.5 | 3,160,000 | 58.5 | 3,160,000 | 58.5 |  |
| 20년 | 7,200,000  | 3,741,000 | 52.0 | 4,341,000 | 60.3 | 4,341,000 | 60.3 |  |

- 주1) 상기 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2024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7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65% 가정시)
- 주2) 실제 해지시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액,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및 갱신담보의 갱신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단위 0.2%를 적용합니다.
- 주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6) 가입 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 문답식 해설(Q/A)

#### □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무엇입니까?

☞ 연단위 복리 0.2%입니다.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라 함은 무엇입니까?

- ☞ 뺑소니사고 :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 자 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에서 가족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 인 동거친족(민법제777조)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